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17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장 정 진 업

●대통령령 제27171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2016년 4월 8일”을 “2019년 4월 8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재원과 관련하여 국가가 70퍼센트,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3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한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을 2019년 4월 8일까지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조정·유지 등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17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강 호 인

●대통령령 제2717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보행자우선도로

제2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

제4조의4의 제목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의4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라”를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평가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도시·군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7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제4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42조의2제2항제1호의2 중 “녹지”를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와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제57조제1항제1호의2마목3) 중 “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을 “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으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4조제6항제6호 중 “이 조 제3항제6호”를 “이 조 제4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나) 해당 토지의 임상(林相)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7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로 위임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경사도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외에 생활인프라 수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1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의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의 보전관리지역이 이미 개발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로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의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제4조의4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 설치의 적정성, 시설 이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대상 추가(제22조제7항제3호)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건폐율 등 인센티브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제25조제4항)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포함 비율 확대(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의 포함비율을 10퍼센트 이내 또는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토지와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을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6항제7호 신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3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17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강 호 인

●대통령령 제271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을 “다음 각 목의 구조물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인공지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주차장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부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인 주차장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17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강 호 인

●대통령령 제27174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7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